

# 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	페이지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문화관광과	1
2.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		9

(2015. 9. 2)

**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**

**[ 전문위원 김 은 모 ]**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

## 1. 안 건 명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

## 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제출일자 : 2015년 6월 2일(화)

-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## 3. 의안 회부일자

- 2015년 6월 5일(금)

## 4. 관계법규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(회계의 구분)

- 제33조(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)

[검토보고]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

### < 제정이유 >

- 동 조례안은 외래 관광객 2,000만 명 시대를 대비, 지속가능한 마포 관광발전을 위한 마포구의 관광 진흥 및 활성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< 주요내용 >

- 가.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의 설치(안 제2조)
- 나.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(안 제3조)
- 다.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)
- 라.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)
- 마. 잉여금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7조)

[검토의견]

- 동 조례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서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 할 수 있다는 특별회계 규정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하여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시 발생하는 세입, 세출 및 잉여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사업의 예산은 특성상 관광객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관광사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자금 조성 후 기금보다는 예산 당해 연도 처리 원칙

에 따라 회계처리가 되는 특별회계 설치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2015. 4. 23. ~ 5. 13. 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○ 주요내용으로는

가. 안 제2조에서는 구청장은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효율적·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

나. 안 제3조에서는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함

다. 안 제4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함

- 관광진흥센터에서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수익금(사용료 및 임대료 포함)
- 구에서 개발한 관광브랜드 상품 및 관광기념품 판매 수익금
- 센터에서 운영한 관광체험 프로그램 운영 수익금
- 서울특별시 및 국가에서 센터 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
-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

라. 안 제5조에서는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규정함

- 구의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
- 센터 및 센터에서 활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·관리비
-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
- 관광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비
-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

바. 안 제6조에서는 회계의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때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

-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도록 함

사. 안 제7조에서는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규정함

- 검토의견으로는 동(同) 조례안은 2015. 6. 24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97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1억 원과 재계약 시 구의회 동의에 대한 조례가 결정된 이후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」을 재검토하기로 보류되어, 이번 회기에 2015.3.18. 합정3구역 기부채납시설 활용방안으로 마포 관광활성화를 위한 『마포 관광진흥센터 설치·운영계획』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를 위해 재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.
- 동 조례안은 그 간 문화관광과에서 마포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서 중·장기적 계획인 「마포 관광발전 기본계획(4개년 : 2015~2018)」을 수립하여 2015. 7. 10. 행정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설명보고회를 가진 바 있고, 마포구와 MBC가 공동 추진하는 상암동 「DMC 문화축제계획」 설명보고회 개최는 물론 2015. 9. 3.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마포구 관광업계 관련인사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마포관광 조찬 포럼을 개최하는 등 마포관광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음.
- 따라서, 동 조례안은 마포구 관내에 관광진흥센터 및 종합안내소 설치·운영과 위탁관련 세부적인 기준과 민간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이 개정됨과 동시에 동 조례도 제정되어야 마포 관광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, 앞으로 마포 관광활성화 기반조성은 물론 구민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임.
- 마포 관광발전 기본계획의 재원을 총당하는 관광사업 특별회계(5년 간)를 보면 세입은 약 19억 5천만 원이고 세출은 약 16억 5천만 원으로 약 3억 원의 순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비용을 추계하였으나, 세입분야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를 보면 합정3구역 및 상암DMC 시설 사용료는 월임대료에 따른 수입

으로 예상수입을 추계할 수 있으나, 관광기념품 판매수익금 약 1,900만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지난 4. 1. ~ 6. 5. 까지 실시한 ‘제1회 마포구 관광기념품 공모전’에서 37건의 작품이 접수되어 4작품(우수 2, 장려 2)이 선정되었으나, 실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, 마포구 특산품인 관광기념품 수입금으로 1,9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 등 비용추계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가 부정확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부서에서는 세입분야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와 함께 마포관광기념품 개발 등 세입방안도 강구하여 자원부족으로 마포관광산업활성화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함은 물론 성공적인 마포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임.

# 관 계 법 규

## 지방재정법

[시행 2015.5.13.] [법률 제13283호, 2015.5.13. 일부개정]

**제9조(회계의 구분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33조(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,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(이하 “중기지방재정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
2.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
3.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
4. 분야별 자원배분계획
5.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
6. 의무지출(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가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하 같다)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(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
7.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

8. 통합재정수지(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(純)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) 전망과 관리방안
  9.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
  10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.
    1. 국가의 재정운용방향
    2.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
    3.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
    4.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
  -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  -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,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「국가재정법」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  -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·제2항·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.
  -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.
  -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 -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

조례 제835호(2011.11.3. 제정)

**제6조(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)** 구청장은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관광정책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.



# 참 고 자 료

## 특별회계와 기금 성격 비교

구 분	특별회계	기 금
근 거	• 지방재정법 제9조 (회계의 구분)	• 지방자치법 제142조 (재산과 기금의 설치)
관련조문	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,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써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	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설치사유	•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액 충당 • 특정사업 운영 • 특정자금 보유 운영	• 특정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
재원조달 및 운용형태	•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	• 출연금, 부담금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용자 사업 등 사업수행
확정절차	사업부서 예산요구 ↓ 예산부서 예산안 편성 ↓ 지방의회 심의·의결	기금운용부서 계획 수립 ↓ 예산부서 협의·조정 ↓ 지방의회 심의·의결
집행절차	• 집행과정에서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가 가해짐(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)	• 집행과정에서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
수입과 지출의 연계	•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	•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
계획변경	• 추경예산 편성	• 주요항목(분야·부문·정책사업) 지출금액의 50% 초과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결
결산	• 지방의회 심의·승인	• 지방의회 심의·승인